



중국의 금융개혁 본격화와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1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되었던 예금보험제도¹⁾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개혁이 본격화됨.²⁾

-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은행 경영 부실 시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보상해주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공식화하였고, 2014년 12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취합한다고 공고함.
- 중국 국무원 성명은 예금보험제도 시행 일자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015년 1월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도함.

■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1993년 말 예금보험기금 설립안이 제출된 이후 1997년부터 동 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최근 예금보험제도 도입이 가시화된 것임.

- 2004년 중국 인민은행은 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 국무원 법제처, 은감회(CBRC)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기본구조를 제시함.
-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업무보고에서 2010년까지 예금보험제도 시행 계획을 밝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됨.
- 최근 중국 당국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함.
 -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2016년 초까지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은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예금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은행체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금보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무원 정식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

1) 예금보험은 시장경제 조건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적인 성격의 금융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10여 개국과 지역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2014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예금금리 자유화, 민영은행 설립,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2014년 중국 금융개혁의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중국의 예금 금리자유화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인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예금자들은 최대 50만 위안(약 9,000만 원)의 예금 한도 내에서 전체 예금의 99.6%를 보장받게 됨.
- 중국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예금보험 관련 단독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예금보험기금을 만들어 운영한 뒤 추후 단독기관을 설립할 예정임.
 - 인민은행 금융안전국은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위험과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금융산업 안정을 유지할 방침임.
- 또한 예금보험제도는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모든 은행은 예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개별 은행 리스크 분석을 통해 차등화하기로 함.

■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중국의 중소형 및 외국계 은행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안전망 및 리스크 대처 능력이 강화되며, 금리자유화 추진 등 향후 금융개혁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는 반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국유 대형은행은 정부의 보장으로 은행업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지만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예금자 및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고, 리스크 관리 및 금융상품 개발에 있어 경쟁우위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예금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금리자유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예금금리 자유화로 은행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져 파산하는 은행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WSJ, 한화투자증권 등)